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22일(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3월 4일, 정윤주 의원 외 6명 발의
-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1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윤주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시 초, 중, 고등학교 및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급식 경비 지원절차 등의 사항을 현행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의 공급이 되지 않도록 더욱 체계화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재의 운영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정을 현재의 운영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함

- 2) 친환경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3) 구청장의 친환경급식 실천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 4) 급식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 5) 지원방법을 삭제함
- 6) 지원 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7)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
- 2)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3)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3. 07. ~ 2024. 03.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학교 급식경비 지원 절차 등 현재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학교급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 제1호의 ‘급식’ 과 제2호 ‘무상급식’ 의 정의를 일원화하여 「학교급식법」 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으로 변경하고 ‘경비’ 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2조제4호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재료’ 용어를 ‘우수 식재료’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함.

<법률 제명 개정 전·후 비교>

기존 법률 제명	현행 법률 제명	비 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일 2012.06.01 시행일 2013.06.02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일 2011.07.21 시행일 2012.07.22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일 2010.05.25 시행일 2011.01.0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 2013.12.27 시행일 2014.12.28

- 안 제2조제6호 및 안 제3조제2호는 식재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임무를 강화함.
- 안 제5조제2항은 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급식경비 지원방식을 규정하였으며,
- 기존 제6조는 지원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이는 최초 무상급식 시행 당시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직거래 및 위탁업무를 위한 규정이었으며, 안 제5조 급식경비 지원 규정에 포괄적 포함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삭제는 적합해 보임.
- 안 제13조 신설은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연 1회 이상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시 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 시설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 됨.
- 그 밖에 안 제3조제1호,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7항 등 개정 사항은 현재의 운영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것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제명 변경사항과 현재 운영현황을 조례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조치 사항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급식소위원회에 학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명확하게 함
- 유해물질 검사 실시에 대한 강행성을 두어, 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정성을 강화함

나. 수정 내용

- 안 제7조 제4항 중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 등을 포함한” 을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등을 포함한” 으로 수정
- 안 제13조 제1항 중 “유해물질 검사가 연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유해물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4
----------	--------

제안 연월일: 2024년 4월 22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급식소위원회에 학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명확하게 함
- 유해물질 검사 실시에 대한 강행성을 두어, 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정성을 강화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 제4항 중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 등을 포함한” 을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등을 포함한” 으로 수정
- 안 제13조 제1항 중 “유해물질 검사가 연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유해물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4항 중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 등을 포함한”을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등을 포함한”으로 한다.

안 제13조 제1항 중 “유해물질 검사가 연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을 “유해물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 정 안
<p>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p> <p>④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u>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 등을 포함한</u>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p> <p>제13조(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조치)</p> <p>① 구청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u>유해물질</u> 검사가 연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p>	<p>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p> <p>④ ----- <u>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등을 포함한</u> ----- ----- -----.</p> <p>제13조(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조치)</p> <p>① ----- ----- ----- ----- <u>유해물질</u> ----- <u>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 ----- ----- ----- -----.</p>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등에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우수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도·농간 지역 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체험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자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

· 축·수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라.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5. “급식지원센터”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의 임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친환경급식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우수 식재료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역을 선정 및 공개하도록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생산지 선정 시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등을 해당 자치단체 및 생산단체 조합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진행하며,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구청장은 재원마련 및 재정분담 방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급식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제4호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제2조제5호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

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운영계획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대상자 수
5. 급식경비·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와 생산자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등을 포함한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
치단체 협약,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보건소장
2. 성북구의회 의원
3.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4. 학교급식 관련 활동 경험 있는 학부모 대표
5.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추천 교장 및 교사
6. 영양교사회 또는 학교 조리사회 추천인
7.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급식지원센터장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
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간사는 급식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 ⑦ 심의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⑧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와 내역
3.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4. 급식재료 생산지 선정 및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5.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한다.

-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를 총괄한다.
- ③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시설관리

또는 정보처리, 공급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가공시설
2.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 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조치) ① 구청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22일(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5일, 성북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위기 상황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 및 신속지원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긴급복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단 기준 구체화(안 제3조제1, 10, 11, 12호)
-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3조제8, 10호)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3)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2. 29. ~ 2024. 03. 20.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 요

- 본 개정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기상황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 및 신속지원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여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호는 ‘입원환자’ 를 ‘가구구성원의 입원’ 으로 변경하고 후단에 ‘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를 명시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가구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가구구성원의 입원’ 은 ‘행위’ 를 지칭하고 있는바, ‘간병·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 를 지칭하도록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 사료 됨.

<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u>가구구성원의 입원</u> ,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u>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u> ,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3조제10호, 제11호, 제12호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¹⁾에서 정한 소득 상실의 위기 상황의 사유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실직·폐업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위기 사유 발생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함.
- 안 제3조제8호는 맞춤형 급여 신청 후 급여 결정 전 ‘동 복지협의체 사례 분과 회의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동장의 추천’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0호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1개월 이상’ 수도 등 공급중단 시기를 삭제한 것으로, 긴급복지 지원의 기본원칙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조치한 것으로 보이나, 공급중단 시기 삭제 시 체납만으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급 중단이라는 위기상황을 명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0.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u>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u>	10.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u>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 경우</u>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제명 변경사항과 현재 운영현황을 조례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조치 사항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안 제3조제1호 중 ‘가구구성원의 입원’ 은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병·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지칭할 수 있도록 수정
- 안 제3조제10호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1개월 이상’ 수도 등 공급중단 시기를 삭제한 것은 긴급복지 지원의 기본원칙인 신속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공급중단 삭제 시 체납만으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급중단이라는 위기상황을 명시

나. 수정내용

- 안 제3조제1호 중 “가구구성원의 입원” 을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로 수정
- 안 제3조제10호 중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을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 으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71
----------	--------

제안 연월일: 2024년 4월 22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제1호 중 ‘가구구성원의 입원’은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병·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지칭할 수 있도록 수정
- 안 제3조제10호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1개월 이상’ 수도 등 공급중단 시기를 삭제한 것은 긴급복지 지원의 기본원칙인 신속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공급중단 삭제 시 체납만으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급중단이라는 위기상황을 명시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호 중 “가구구성원의 입원”을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로 수정
- 안 제3조제10호 중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을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가구구성원의 입원”을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로 한다.

안 제3조제10호 중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을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p> <p>1. <u>입원환자</u>,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u>경우</u></p> <p>10.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p> <p>1. <u>가구구성원의 입원</u>----- ----- ----- ----- ----- ----- <u>경우</u> <u>(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u></p> <p>10.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u>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u></p>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p> <p>1. <u>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u>, ----- ----- ----- ----- ----- ----- -----</p> <p>10.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u>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 경우</u></p>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입원환자”를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로, “경우”를 “경우(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동 복지협의체 사례분과 사례회의를 통하여”를 “동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을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월세”를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u>입원환자</u>,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u>경우</u></p> <p>2. ~ 7. (생략)</p> <p>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u>동 복지협의체 사례분과 사례회의를 통하여 추천한 경우</u></p> <p>9. (생략)</p> <p>10. <u>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u></p> <p>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p> <p>1. <u>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u>,----- ----- ----- ----- <u>경우(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u></p> <p>2. ~ 7. (현행과 같음)</p> <p>8. ----- ----- ----- ----- <u>동장이</u> ----- -----</p> <p>9. (현행과 같음)</p> <p>10. <u>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 경우</u></p> <p>11. <u>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u>----- ----- -----</p>

12.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3. ~ 17. (생략)

12.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13. ~ 17.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22일(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5일, 성북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상담
이용료 기준을 반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9조)

가) 법 제10조의 제목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함.

2) 상담수수료에 관한 기준 정비(별표1)

가)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제3항 관련)"을 "(제7조제3항 관련)"으로 수정

나) 같은 표 서식 중 평균과 외부 민간기관 부분을 삭제

다) 같은 표 심리검사 항목 중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 조정금액을
기존 13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금액 변경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별지)
-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기 타

가)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2. 29. ~ 2024. 3. 20. (20일)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다)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라)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반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인권 영향 평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주요 심리 검사 및 상담, 치료 교육 수수료 기준” 표에 세부항목에 외래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한글로 번역하거나 쉬운말로 풀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병기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주요 심리 검사 및 상담, 치료 교육 수수료 기준” 표에 세부항목에 종합심리검사(플배터리), 문장완성검사(SCT), 다면적 인성검사(MMPI), 잉크반점검사(로샤)를 함께 기재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변경.

마) 법제심사 결과 : 이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담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9조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²⁾의 제목 개정 (2021. 3. 23. 개정되어 9. 24.부터 시행)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안 별표1 개정은 제목 중 "제8조제3항 관련"을 "제7조제3항 관련"으로 기존 오류 사항을 수정하고, 심리검사 항목 중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 조정금액을 기존 13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상담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비한 것임.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담수수료에 관한 기준금액을 정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목개정 2021. 3. 23.]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22일(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5일, 성북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유형	정원	개소	비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성북구 보문사길18, 4층 (보문동)	470㎡	융합형	40명	2024.7	신규 설치

2)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다. 관련근거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 라 함) 성북13호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키움센터’ 성북13호점이 2024년 7월 신규 설치 예정임에 따라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지정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시설 현황 및 설치비는 다음과 같음.

< 대상시설 >

유형	위치	규모	정원	종사자	개소시기(예정)	소유자	비고
융합형	보문사길 18, 4층 (보문동)	470㎡	40명	4명	' 24.07. (예정)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	신규 설치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제4차 공간확정 심의 결과 선정 통보(市→區, 2023.11.30.)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3호점 설치비>

(단위 : 천원)

시설비 합 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설계비	
	소 계	국	시	구	소계	국	시	
397,740	322,740	30,000	257,740	35,000	50,000	40,000	10,000	22,000

※ 위탁 운영비: 343,209천원(국 43,171 시 183,503 구 116,534)

- 인건비: 201,525천원
- 운영비: 34,164천원
- 급식비: 107,520천원

다. 민간위탁 근거 및 지정위탁의 적정성

- ‘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³⁾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⁴⁾ 제1항에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바,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⁵⁾에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보건복지부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33~34페이지)의 위탁기준 및 선정 방법에 따르면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사용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이 가능’ 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유자인 재단법인 대한불교보문원과 2021년 6월, 20년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바, 키움센터 성북13호점의 지정위탁 추진은 가능하다 사료 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 성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

시설명	센터장	행정동	주소	면적 (㎡)	정원 /현원	개소일	위탁운영
1호점	손민경	장위1동	장위로21다길 53, 장위행복누림센터 3층	110	29/29	19.01.01.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교육연구원
2호점 융합형	김정미	석관동	화랑로 214, 래미안석관아파트 내	269	35/35	20.12.21.	
3호점	장현옥	동선동	아리랑로 27-3, 2~3층	149	30/30	21.09.01.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4호점	이화재	장위2동	장위로40다길 10	187	30/30	21.03.01.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5호점	양재연	정릉2동	아리랑로19다길 12	194	30/30	21.09.01.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6호점	이정민	돈암2동	아리랑로 89, 일신건영아파트 내	153	30/30	21.10.01.	사단법인 해피피플
7호점	안명자	길음1동	길음로 118, 404-101 이편한세상아파트 내	84	20/20	21.10.01.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8호점	신호영	길음2동	송인로 50, 114동 1층 센터피스아파트 내	106	26/26	21.03.01.	
9호점	김정윤	정릉4동	보국문로16길 2, 2층	90	23/23	21.03.01.	사단법인 해피피플

시설명	센터장	행정동	주소	면적 (㎡)	정원 /현원	개소일	위탁운영
10호점	이은영	종암동	종암로25길 29, 마을사회적경제센터 2층	238	30/30	21.09.01.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11호점	김지윤	삼선동	보문로29길 101, 3층	132	30/30	22.07.01.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12호점	안은숙	길음1동	삼양로9길 14-7, 2~3층 길음소리마을센터	196	30/30	23.12.18.	사단법인 세대통합복지문 화교육협회
시립 거점형	최명숙	종암동	회기로3길 17, 2~5층	1,170	-	22.10.01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